

<별표 5> <일부개정>

정보기술부문 실태평가 대상 금융회사

1. 「은행법」에 의해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다만, 「은행법」 제58조에 의해 인가를 받은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은 제외한다.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협은행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해 인가를 받은 외국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지점 등은 제외한다), 증권금융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 및 한국예탁결제원
4.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다만,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제외한다. 보험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 및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화재보험협회
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다만, 신용카드사 이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직전 사업년도 기준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회사에 한한다)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거래소
8.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및 상호저축은행(다만, 직전 사업년도 기준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에 한한다)
9.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